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6항제1호의6을 제1호의7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6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

별표 1 중 총계 “647”을 “648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장관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 1 다음에 “청년보좌역(5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653”을 “654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장관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 1 다음에 “청년보좌역(5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고등교육정책실) ① ~ ⑮ (생략) ⑯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의5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1의6.</u> (생략) 2. 3. 삭제 4. ~ 31. (생략) ⑰ ~ ⑲ (생략)	제6조(고등교육정책실) ① ~ ⑮ (현행과 같음) ⑯ ----- -----. 1. ~ 1의5. (현행과 같음) <u>1의6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</u> <u>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</u> <u>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</u> <u>지원</u> <u>1의7.</u> (현행 제1호의6과 같음) 4. ~ 31. (현행과 같음) ⑰ ~ ⑲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647</u>	<u>648</u>	+1
.	.	.	
.	.	.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.	.	.	
장관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	1	.	
<u>청년보좌역(5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.	.	.	
.	.	.	

[별표 1의2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653</u>	<u>654</u>	+1
.	.	.	
.	.	.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.	.	.	
장관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	1	.	
<u>청년보좌역(5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.	.	.	
.	.	.	